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행정 위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1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00년 12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최병찬)

가. 제정이유

식품위생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우리 구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4)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기반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식품진흥기금 설치의 근거규정이 생겼으며 같은 날 동법 제65조제4항에 본 기금의 제원조달 규정을 확정하였는 바,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시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였으며, 2000년 7월 27일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의 60%를 본 기금으로 배분하는 조항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련지침”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이 2000년 9월 27일 통보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에서는 제원 충당의 목적, 제3조는 기금조성제원을 과징금과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제5조는 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청장이 하고 용자대상자 선정 및 용자방법, 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제8조·제9조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운용관리업무를 정하며,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은 소관 담당주사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제11조는 심의회의 기능이며, 제12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규정, 제13조는 회의의결 정족수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 지급근거조항이고, 제14조는 기금의 용자총액,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공고규정이며, 제15조에서 제17조는 용자대상, 용자신청방법, 용자한도와 조건, 절차 등을 정하였고, 제18조는 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며, 제19조는 부정·불량식품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근거규정이며, 제20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안)에 의한 재정조례(안)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금년 7월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의 60%만 우리 구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 전망은 무리라고 추정되어 제4조의 용도에 효과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획기적인 기금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안 번호	154
----------	-----

제출년월일 : 2000. 11. 2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1)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4)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1)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에 의함 .. (안 제3조)
- (2)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 (안 제4조)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10조)
- (4)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계획 수립 공고 (안 제14조)
- (5) 용자금의 용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 (안 제17조)
- (6)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 (1)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과징금, 2000. 07. 13. 시행)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2000. 07. 27. 공포)
- (3) 식품진흥기금 운용지침 : 보건복지부 약식 65400-10435(2000. 07. 24.)
- (4) 서울특별시에서 준칙 시달 (보위65400-2475, 2000. 09. 27.)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조례안 : 별첨.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5.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용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용자방법, 용자조건 및 용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금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과장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제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 3 장 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4. 동장

④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

제14조(용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

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용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자하여야 한다.

제17조(용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용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 5 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19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0. 12. 4) 상정
제7차 행정위원회(2000. 12. 9) 상정의결